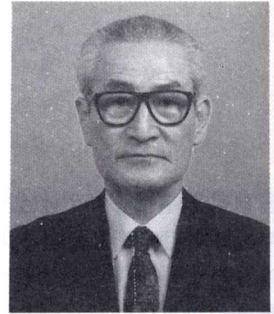


화재사고와 보험기간



민 병 채
(부산대학교 교수)

1. 머리말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시간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고 위험부담이 존속하는 기간중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존속하는 일정기간, 즉 보험자의 손해보상 의무와 관계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의 개시전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해라도 그것이 보험기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결과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보험기간 종료후에 발생한 손해라도 그것이 보험기간중에 생긴 보험사고의 결과인 경우 보험자는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보험기간과 구별해야 할 것으로 보험계약기간이 있다. 이는 보험계약 성립시부터 그 종료에 이르는 기간, 즉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자의 위험부담은 보험계약에 의거하므로 보험



계약기간의 종료는 보험기간의 종료가 된다. 그러나 보험기간의 개시는 보험계약 성립전으로 소급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보험계약 성립후의 어느 시기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기간 확정의 문제는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분쟁을 미리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타의 손해보험의 보험기간과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그것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원칙으로서 그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화재이다. 실제로 행해지는 화재보험(현행의 화재보험인 협의의 화재보험과 주택화재보험, 주택·상공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및 가정생활보험 등의 광의의 화재보험 포함)에서는 화재이외에도 도난, 폭발, 파열,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 물체의 낙하, 차륜과의 충돌 또는 접촉,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따른 폭행, 풍수설해, 상해비용 등도 보험사고로 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화재사고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화재보험에서 말하는 화재는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불자리가 없는 불, 또는 그와 같은 불자리를 이탈한 불로써 자력(自力)에 의해 확대할 수 있는 불이라고 본다. 여기서 불자리란, 불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물(物), 장소, 설비 등을 말한다.

한편 화재사고의 특질로서 들 수 있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후 진화까지 어떤 시간적인 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보험기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험사고로서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시간적인 폭을 가지고 있는 화재가 보험기간의 종료시에 걸쳐 있거나 또는 개시시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어떠한 시점에서 인정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어떠한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인정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보험기간의 시기(時期)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그것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기간이다.

화재보험계약은 다른 손해계약과 같이 낙성계약(諾成契約)이므로 계약의 성립요소(계약당사자, 피보험위험, 피보험이익, 보험료)에 관해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만으로 계약은 즉시 성립되며 또한 즉시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의 실무에서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초일의 오후 4시에 개시하여, 보험기간 말일의 오후 4시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증권중에 이와 다른 시기, 예를 들면 오후 4시 이전의 특정된 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때에 보험기간이 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내용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료의 지급이 필요하다. 보험자는 보험료의 영수와 선급제(先給制)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기간의 개시를 보험료의 영수와 관련시키고 있다.

화재보험약관 제2조에서는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도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면 보험기간은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은 추가보험료의 지급에 관해서도 동일하다.(화재보험약관 제6조 2항 참조) 이리하여 화재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또한 보험기간이 도래하여 형식상의 보험기간이 개시되어도 보험료 영수전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의 개시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통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되어 그 첫날의 오후 4시에 보험기간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으나 첫날 오후 4시 이전에 이미 화재가 발생하여 오후 4시 이후에도 연소된 경우 오후 4시 이전의 손해는 물론 4시 이후의 연소손해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계약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 개시시간을 하오 4시로 한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적인 사회활동의 시간을 상오 9시~오후 5시까지로 한다. 이중 경제활동은 주로 상오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에 치중된다.

둘째, 금융기관, 우체국 등의 금전출납시간의 표준이 상오 9시 30분에서 오후 4시까지가 된다.

셋째, 대부분의 상거래에서의 금전거래는 정해진 시간안에서만 출납을 하게 되므로 이 경우의 시간을 금융기관의 마감시간과 맞추게 된다.

넷째, 보험회사에서 청약을 접수하였을 때 최소한 위험관리를 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바 이 경우 위험처리 한정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것이다.

4. 보험기간의 종기(終期)

보험기간의 종기는 보험기간 말일의 오후 4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화재는 시간적인 폭을 가지고 계속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화재의 원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시점에서 보험사고인 화재의 발생을 인정할 것인가 또 어떠한 범위의 손해가 보상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예를 들면 특정일의 오후 4시에 보험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그 날의

오후 3시에 보험의 목적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를 계속하여 오후 5시에 전소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의 책임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설이 있다.

① 손해설(損害說)

이 설에 의하면 보험기간중인 오후 3시부터 보험기간의 종기인 오후 4시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학설이다. 그러나 이 설은 오후 4시 이전의 손해와 그 이후의 손해를 실제상 구별하기 곤란하다는 결점이 있다.

② 이재설(罹災說)

이 설에 의하면 보험기간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고 보험기간 종료후 즉 오후 4시 이후에도 계속 연소된 경우 오후 4시 이전과 그 후의 손해도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설이다. 이 설이 통설로서 적용되고 있다.

③ 위험설(危險說)

이 설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화재위험(원인)이 발생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 보험기간 종료후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학설로 이는 주로 대화재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하나 보험회사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재설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보험기간의 말일 오후 4시 이전에 화재 손해가 발생하였고 오후 4시 이후에도 계속 연소되

었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오후 4시 이후의 손해도 보상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구화재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보험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이 보험금액의 5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계약은 끝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3년 4월에 개정된 현행의 화재보험약관에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여 보상후의 잔액이 보험금액의 5분의 1 미만이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되도록 되어 있다.

5. 맺는 말

이상으로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기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통설은 보험사고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된 모든 손해 즉, 보험기간 종료후에 까지 발생한 손해가 보상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와 화재에 따른 소방, 피난손해 및 피난장소에서 5일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즉 화재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화재가 생긴 이상 그 화재의 원인 및 결과를 묻지 않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